

백영화 연구위원

### 요 약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 및 보험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보험회사의 동의 기준 등을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대상에 추가하고, 대형 손해사정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영업기준 요건을 갖추도록 함. 또한,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을 허용하고, 보험업 허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2021. 9. 9.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대상 추가, 손해사정업자의 영업기준 추가, 보험회사의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 허용, 보험업 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비대면 해지 관련 조항 정비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함
-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대상을 추가함(감독규정 개정안 제4-35조의2)
  -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상법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함
    - 상법 제662조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 또한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보험회사의 동의 기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및 근거를 설명해야 함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의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데,<sup>1)</sup> 이와 관련하여 보험협회의 모범규준에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 통보 시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하고 만약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sup>2)</sup>
    -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보험회사의 동의 기준 및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및 근거를 설명하도록 명시적으로 설명의무 대상에 포함시킨 것임

1)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2) 보험협회(2019. 7. 19),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 손해사정업자의 영업기준을 추가함(시행령 개정안 제98조, 감독규정 개정안 제9-18조)

- 대형 손해사정업자(직전 분기말 기준 소속 손해사정사가 100인 이상인 손해사정업자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손해사정업자)는 공정한 손해사정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한 영업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영업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게 되며, 보도자료에 따르면 업무처리 절차, 이행상충 방지 장치, 소비자 보호 장치 등이 포함될 예정임
- 또한 손해사정협회(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가 소속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소속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의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을 허용함(시행령 개정안 제16조)

-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겸영업무의 하나로서 선불전자지급업무<sup>3)</sup>를 추가함
  - 다만,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 허용은 보험업 또는 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의 영위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함
  -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나 보험료 납부 등에 그러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sup>4)</sup>

○ 보험업 허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함(시행령 개정안 제9조 및 감독규정 개정안 제2-5조)

-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다만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실제 조사에 걸린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와 같이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의 기준을 구체화함
  - 즉, ① 보험업법상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②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기간, ③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 또는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보험회사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검찰청·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허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한편 금융위원회가 위 ③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임

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보도자료(2021. 7. 14), “보험업권의 건강·생활 플랫폼 구축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과 함께 종합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한 플랫폼 경험을 제공합니다”

○ 비대면 해지 관련 조항을 정비함(시행령 개정안 제43조)

-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비대면 해지)와 관련하여, 현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비대면 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보험계약자의 사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자가 계약 해지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비대면 해지가 허용됨
  - 2021. 8. 17.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2022. 2. 18.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에 따라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상 보험계약자가 전화 또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험회사로 하여금 '계약 체결 전에 통신 수단을 이용한 계약 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임